

규 칙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
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순천시의회 의장



허유인

2021년 2월 3일

순천시의회 규칙 제46호

붙임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전문위원) ② 항 전문위원 사무분장 사항에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전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의결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신설> 7.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① 생략 <별표개정> ② 1~5 생략 6.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7. (생략)